

기록관리 혁신 관련 「공공기록물법령」 개정 2차 설명회 오픈 채팅방 의견 취합

일시 : 2018.5.16., 15:00~18:00

최대 접속자수 : 168명

1. 법의 목적, 정의, 의무 등

- 기록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은 좋음
⇒ 그동안 포착하지 못한 기록을 더 잘 기록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음
- 기록 정의와 관련하여 더 나아가서 지침에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종류나 구분이 있으면 함. 현장에서 기록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음
⇒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해보려 노력하고 있음. 지침으로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기록물"보다는 "기록"으로 표현하는 부분 좋음. 아무래도 기록물은 범위가 하드카피로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 응원함
- 기본적으로 그간 공공기록물법이 법령치고는 너무 과도한 부분까지 규정하여 정작 법령으로서의 기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번 개정은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범위와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함.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은 오히려 법령의 권위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았음을 고민해야 함

2. 기록관

- 공공기관의 인력 예산 문제는 법령 개정만으론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프로임. 법령에서 기록관 위상 제고를 논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
- 기타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아직 걸음마도 못 뚫 수준이 많음. 이번 혁신을 통해 전반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길 바램
- 한 개 이상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 해야 한다 혹은 기록관의 규모에 따라 몇 명의 전문요원은 최소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 인력확보는 쉽

지 않음

-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본사 및 지역본부가 10여 개에 달하는 곳도 있음. 기관의 규모에 맞는 기록관 인력구축이 필요하다고 봄
- 기관의 감사부서나 중앙부처의 감사부서에 기록전문가인 기록연구사를 필수로 두는 방법도 필요함
- 변호사나 회계사나 노무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음
- 동의함. 현재 대부분 기록관리 업무가 힘이 없는 부서에 있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경평에 반영되어있으나 기관 내에서는 윤리지수에 들어가 있어 사실상 아직까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임
- 기관 내 기록관리 규정 만들겠다고 보고했더니 규정 있으면 직원들 신경 쓸 일, 의무가 늘어나니 규정 만들지 말라함
- 기타 공공기관은 정말이지 기관이 100개면 100가지의 사례가 있음
- 전처럼 인력 확보 및 배치 공문만 오면 그냥 접수처리 하고 끝남. 일반 행정직 티오도 기재부승인 얻기 어려운데 기록관리 인력 줄 리가 없음
- 결국 기관장이 경영진회의에서 관심을 보여야만 겨우겨우 움직이는 것이 현실임
- 접수 처리도 행정 총괄하는 본부에서 안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기록관리 담당부서에 무조건 전달함
- 기록관리 일의 범위와 중요성을 모르니 부서장도 서무정도로 생각하니 일 별리지 말라고 함
- 기관장의 관심에 무조건 기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기관장은 정규직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음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법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지자체 예산담당자들도 해당 기관들에 필수적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것임
- RM과 AM을 구분하고 중간 단계의 기록관(지역별, 주제별, 유사기능별)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민 필요함. 현재 국가기록원의 위상에 비해 수용 가능한 아카이브는 제한적이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선기관에서는 RM만으로도 벅참. 중간단계의 AM 전담 기관이 훨씬 다양한 층위에서 필요함
- 사실 소규모 산하기관들은 정원 증원도 힘든데다, 예산 반영이 안되면 도로아미타불임
-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고 기관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 정규인력을 증원한 사례가 있음
- 직접관리기관이 되어야 한다면 그 많은 소규모 산하기관들은 어찌해야 할지
- 군기관 특례(각 군 사단급에 설치해야 하는 기록관의 인력배치에 관한 것)에 대한 내용 삭제 요청함
- 생산시스템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른 인력 지원 없이 혼자 생산시스템도 하고 기록관리

등등의 업무하기가 너무 벅참. 그리고 개인정보도 같이 묶어 팀 만드는 시도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도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아님. 전산시스템 접근도 못하는 내가 그쪽 일까지 같이 책임지고 계획세우고 공유노출에 대한 위험도 많고 버거움. 개인정보 같이 묶는 것은 많은 고려 후에 넣었으면 함.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는 절대로 같이 엮이고 싶지 않음

- 기록관이라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필요함. 사실 공공기관 중에는 전문요원만 뽑아놓고 알아서 하라는 경우도 많아서 이관을 받지 못해 이관연장 신청서로 근근이 하는 경우도 많음. 서고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니 기조실에서 '안 만들면 벌칙으로 처벌되는지, 그럴 경우 공간을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함
- ⇒ 기록관에 조직+인력+시설을 아우르는 정의가 포함되도록 검토하고 있음
- 기록물 양별로 공간 뿐만 아니라 필요 인력수도 주면 좋을 듯함

3. 기록물 평가(폐기)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없는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는가?
- 사립대는 기록관리를 대학평가에 포함 안 시키시면 절대 움직이지 않음. 모 대학은 전문요원 없어도 폐기함. 사실 신고를 안 하면 모르고 현실적으로 누가 신고를 하겠나? 대학당국은 그게 위법인지 조차도 모름
- 기타 공공기관도 그런 곳 많음. 법적절차에 맞게 폐기하도록 국가기록원에서 안내공문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음
- ⇒ 전달하겠음
- 기록물관리자가 없는 공공기관은 자료를 모아두기 밖에 못하는가? 폐기는 할 수 없나?
- 폐기 관련 공문이 국가기록원에 오면 대학본부는 읽지도 않고 그냥 기록관리 부서에 전달함. 불법인줄 모름
- 사실적으로 전문요원이 없는 곳은 현재도 폐기하고 있음
- 사립대 평가심의 가보면 관리자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음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없이 폐기하더라도 전문업체 통해서 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기관도 있음
- 그래서 기록물을 공간에 보관만 함
- 기타 공공기관은 형식적으로 담당자 지정만 해놓은 실정임
- 기재부는 사람 안 줄려고 하고 기록물은 계속 쌓여 답이 없을 지경이고 폐기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총체적 난국임
- 그래도 폐기가 전문요원 통해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 어딘가? "공공기록물 법? 그게 뭐야? 어쩐지 그런 게 있을 거 같았어"라는 말을 최근에 들었음

- 기관이 크고 전국에 지부가 산재해 있는 경우 전문요원 1, 2명이 효율적으로 기록관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폐기전문요원이 되기 십상임
-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침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정원 증원과 예산도 요청해야함.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의무에 대해 공감이 이루어져야 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없이 기록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인가?
- 전문요원 평가와 평가심의회를 거쳐야함
- ⇒ 제 짧은 소견으로는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에서는 불가능함
- 그냥 참고자료라면서 자체폐기해서 감사실에 문의한 적도 많음
- 평가심의회시 위원구성을 변경 부탁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에 3인이 내부 2인이 외부임. 내부 3인이 폐기 찬성 시 폐기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 지연처분의 경우 한편으로는 정보공개법과 대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을 심의회에서 지연처분으로 폐기 결정했다하더라도 폐기집행 전까지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반면 기관이나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폐기 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보부존재나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함
- ⇒ 지연처분을 강제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폐기로 결정 났을 때 부존재로 처리되는 것은 검토하겠음
- 개정할 때 전국에 부서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고려를 해주길 바람. 이관 후 폐기하게 되어있는데 이관 비용 때문에 파쇄업체와 연결해서 실물을 이관하지 않고 목록으로 심의 거쳐서 진행하는 곳도 있을 수 있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서 스캔 문서를 원본으로 동일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개정되면 원본이 폐기 가능하게 됨. 이 내용을 국가기록원에서는 인지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함
- ⇒ 전자상거래 인지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음
- 그 부분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는데 민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음. 공공기관은 우리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 장기보존기록에 대한 기록물의 재평가 절차가 있었으면 함. 사실 일부 기록은 말도 안 되게 준영구, 영구로 설정된 것들이 있어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두기엔 공간문제나 관리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 검토 중에 있음. 그러나 또 그에 대한 역효과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음
- 병원의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기록물이 다양한 보존기간을 가짐. 처방전(2년), 간호기록지(5년) 등 사람의 생애주기에 맞지 않게 각각 보존기간을 가지며 법에서는 각 기록에 따라 1회 연장만 가능하게 되어있음. 법에 따라 폐기 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추후 환자가 군문제 등 이유로 본인의 진료기록을 요청하였을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한사람을 하나의 시리즈로 본다면 개별적으로 각각의 기록을 폐기처리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기록 관리 인지 궁금함

⇒ 법으로 규정된 보존기간이라 평가 시 고민이 느껴짐. 기록인으로서 법적 문제보다 윤리적으로 고민이 될 듯함. 이런 사례 알려줘서 감사함

- 스캔본을 원본으로 인정하면 안되는지 검토바람
-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원본을 폐기해서는 안되지 않나?
- 거의 대부분 스캔하고 원본은 낱장으로 돌아다녀서 점검 때도 힘들
- 요새 스캔도 마이크로필름 못지않은 품질이 많음
- 타부서의 사람이 폐기한다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법규가 없으니 순환보직 될 가능성이 높음
- 타부서에서는 할 수 없음
- 기록물관리부서에 속한 자만 가능함
- 폐기사업 없을 때는 타부서에서 근무하다 폐기사업 시에만 돌아오는 변칙도 들어봤음
- 타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파견형식으로 기관에서는 나오기도 함
- 우리 기관은 본부 총무에서 무단폐기 하다가 제가 자격증 취득하니 '이제 마음 편히 폐기해도 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함

4.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적정 수 및 비정규직 문제 등

- 기록물이 기록으로 바뀌듯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명칭도 바뀌길 기대함
 -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일 궁금함
 - 기록관리사, 기록연구원, 기록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음. 명칭은 통일되어야 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증원요청을 하면 기재부 담당자는 “당신네 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음
 - 기재부에도 연구사가 있을 텐데 담당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현실이 씁쓸함
 - 기록물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어떠한가?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무조건 두어야하는지 문의드림
- ⇒ 현재 법률상 생산량 천권 보존량 5천권이상인 기관은 의무배치임. 개정안에는 모든 기관이 기록관 설치대상이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함. 다만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함
- 전문요원자격요건 법령에 있음
 - 법률상의 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고 변경하였으면 좋겠음
 - 전문요원 명칭통일 의견에 동의함

- 현실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채용이 어려움
- 계약직 또는 경영실적을 위해 시간제로 채용함. 심지어 파견근로자도 있음
- 필요성을 못 느끼니 채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력 증원 승인 해놓고, 예산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실정임
- 사람줄 땀 기타공공기관이라 미뤄지고, 의무가 아니라서 빠지고, 늘 우선순위에서 밀림
- 국가기록원과 기재부의 빅딜이 필요함
- 지자체 출연 기관임. 비슷한 유형의 인근 기관에 물어봐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있는 곳이 흔치 않음
- 공공기관의 경우는 너무나도 다양함. 전체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는 자율성에 맡기고 앞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 형태부터 확립이 되어야 함
- 앞서 말씀처럼 배치뿐만 아니라 업무부분에서도 분명 정리가 되어야 함. 기관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관리 업무만 할 수 없음
- 결국 인력 증원 문제는 기관과 기관 사이의 정치력 싸움이라고 생각함. 우리에게서 강한 협상력을 지닌 사람이 필요함. 국가기록원에서도 더욱 더 정진해주었으면 함
- 인력충원 없이 법만 강화된다면 기록연구사 더 힘들어 짐. 인프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람. 기관에 따라서는 현용·비현용 기록물의 업무 구분을 하지 않음. 생산시스템과 RMS 둘 다 관리함
- 최근 평생교육사는 어떤 정책을 폈는지 모르겠으나 말 안 듣는 사립대도 모두 다 필수로 배치했음. 사립대에서 기록연구사는 평생교육사 보다 못한 존재임
- ⇒ 정책을 알고 싶어짐. 안 그래도 조직, 인력 확충한 사례를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음. 혹시라도 공문이나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길 바람
- 교육부 평생교육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거나 관련 법령 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을 듯함
- ⇒ 알아보겠음
- 저도 관심 있으니 한 번 알아보고 글 올려보겠음
- 알아보고 글 올림(5월 17일 게시). 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중앙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평생교육사 미배치 점수를 감점 받으며, 이럴 경우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학생 정원을 늘릴 수가 없음. 또한 벌금도 물게 됨. 그래서 소위 말 안 듣는 사립대학도 모두 평생교육사를 정직원 배치하였다고 함. 도서관의 경우에도 대학평가에 도서관이 포함되고 대학평가 점수에 따라 각종 제재(학생정원 조정, 지원금 감축)가 철저히 실행됨에 따라 위축이 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 한편 박물관의 경우 대학평가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서 박물관을 없애거나 학예연구사를 대부분 계약직으로 돌리고 축소시키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늘고 있음.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강력한 법규정과 실행 시 이에 대한 반대급부 혜택, 철저한 관리 감독 실행이 필수임을 알 수 있음

- 기관에 배치된 분들은 힘이 없음. 더구나 임기제나 시간 선택제인 경우 열심히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기록은 걱정임
- 계약만료 되어서 다시 계약하고 연봉은 그대로인 상황에 의무와 사명감만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채용되면 폐기 언제 하나고 전화 옴
- 기록연구사=폐기하는 사람
- 폐기하려고 뽑아놓고 기록물현황조사 할 인력 예산도 안주고 무턱대고 폐기하라고 함
- 기록물 폐기하면 올해 KPI 다 채우는 거라고 말함
- 공공기관 중에 인력 증원에 성공한 사례 있음. 그런 것들을 공유하였으면 함
- 이제는 전문요원 파견직까지 등장하였음
- 파견직이 폐기 가능한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바람
- 파견직 불가능함
- 파견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니라 불가함
- ⇒ 파견직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라 보지 않음. 그런 자리는 우리 스스로 거부하면 안 될지. 몇 년 전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지방 9급에 합격했다 변호사 집단 반발로 임용을 포기했는데 우리도 그런 자존심은 지켜야 하는게 아닐까?
-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윗분의 말씀에 동감함
- 전문요원이라는 용어 안 쓰면 좋겠음
- 차리리 기록물담당자가 더 나옴
- 법적용어로 기록연구사도 괜찮지 않을까?
- 연구사는 공무원만 사용함
- 그래서 법으로 전문요원이란 명칭을 연구사로 바꾸자는 것임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기록전담부서에 없고 지사나 지점 등 타 업무를 해도 되나?
- 지방공기업 직원임. 경영평가에 기록관리가 반영되면서 업무분장에 갑자기 기록물관련이 추가되었음. 전혀 모르는 분야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교육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도 이해 못해서 답답함
- 인력배치는 직접기관이 되어 평가를 받아야만 배치하는 건 아닐 것임. 지난 경험상 지방이전 등 기록관리에 관한 인식전환이 있을 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가 가장 활발했음
- 정부산하기관은 기록물관리사나 담당자가 차라리 나올지도 모르겠음
- 기록관리 자격증 내도 자격수당도 없음
- 계약직은 수당이 연봉에 포함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관리부서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함. 타 부서에서 다른 일을 하다 폐기만 하면 전문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기록연구사 중앙부처에서 국립대로 파견한 기관도 있다고 들었음
 - 대학원 경력인정 요청함.
- ⇒ 자격수당은 게시판에도 올라와서 열심히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
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임. 조만간 그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올릴 예정임
- 현재 배치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도 해주었으면 함

5. 기관 (경영)평가, 실태조사, 컨설팅

- 기록원이 솔직히 정부산하기관에 제대로 실태조사 할 건지 궁금함. 서면으로 공문발송 하는 것 지양하길 바람
 - 기록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픔
 - 법만 개정해선 안 됨. 실질적인 제재와 통제가 필요함
 - 기타 공공기관도 경영평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록관리는 요원함
 - 경영평가 세부 평가항목이 빨리 공표되었으면 함. 지금은 범위가 광범위함
 -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록물관련 지표가 들어간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지?
 - 기억으로 지난주에 지표 안이 왔음. 평가담당부서에 확인해 보기 바람
 - 경영평가 비계량 지표 윤리경영부분에 중요기록물 분류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올해 지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음
 - 기타 공공기관 중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기초과학연구회로부터 기관평가를 받는 곳도 있음. 그 경영평가가 아닌 기타 공공기관 기관평가지표에도 기록관리관련 지표가 들어가는지 궁금함
- ⇒ 담당 부서에게 질문 전달토록 하겠음
- 법 개정 전에 가능하면 것처럼 신청받던가 해서 기관방문 컨설팅했으면 함. 우리 공사의 고민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싶음
 -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관리컨설팅을 해주시면 좋겠음. 현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미배치 기관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치기관도 1년이내든 기한을 좀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음. 처음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함
 - 국가기록원에서 점검도 자주 나왔으면 좋겠음
 - 컨설팅 수요는 많은데 기관 눈치도 보이고 기록원 자원도 부족할 것 같음
 - 컨설팅 얼마 전 문의하니 하반기 즈음 한다고 들었음
 - 대학평가에도 기록관리분야 넣었으면 함

6. 기록의 생산

- 생산의 의무가 있다면 생산된 기록을 관리해야할 의무도 당연히 있음. 일단 공무원이 생산토록 해야 하는 그 행위는 누구의 업무이고 책임인가? 결국 지침에서 업무보고는 어떤 식으로 생산시스템에 등록시켜야하는지 기타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생산시스템 관리부서와 고민하고 방법을 제시해야함. 그 수많은 다양성을 어떻게 지침화시켜 내려 보낼 수 있을지 고민임
- ⇒ 이번 혁신, 법령 개정의 목표는 생산통제임. 그렇지만 의견 주신 분의 말씀처럼 다양성을 포용하기 어려움
- 생산시스템이 사립대학에도 구축될 수 있는 방안과 예산 확보가 필요함. 단계적으로 기록관설치, 기록연구사 채용, 기록물생산, 보유현황 현황조사, 기록물분류체계구축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하는 방안 등 이런 논의가 되었으면 함
- 생산시스템 관리를 기록관리에서 할 수 있었음 좋겠음. 기록생산단계부터 관리하려고 해도 협조가 너무 안 되고 왜 기록관리에서 통제하려고하냐는 반응이 나옴
- ⇒ 생산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에 이관된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부담을 줄뿐임. 고민하고 있으므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람
- 사실 생산시스템 관리부서에서는 기록물 생산과 관련, 전문요원과 상의하여야 한다거나 기록물관리법령의 내용을 살펴야 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모름. 생산시스템 구축 혹은 고도화 등을 할 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한 번쯤 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생산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기록관리와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이 너무 미비한 상황임. 담당자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듯함
- 기타 공공기관은 업무시스템에 주 사업과 관련된 기록이 많이 생산됨.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연구에 나온 것처럼 필요한 기능 모듈이라도 생산시스템에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RMS 구축에 유연성을 고려해주길 바람
- 시스템 구축용역 발주 시,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보화진흥원에서 체크리스트를 주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반려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체크리스트에 한 줄 들어가도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공공기관에는 각 업무 당 시스템으로 하는 업무도 많이 생기고 있음. 시스템 만들기 전에 기록정보로 관리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기록관리 부서 사전협의 절차가 꼭 들어갔으면 함
- 동의함. 체크리스트 같이 우리도 그런 요소를 반영하면 효과적일 것임
- 정보화부서에 시스템개선이나 기타 사항을 요청 드러도 부서의 의욕 혹은 협조의지가 없다면 추진하기가 무척 어려움. 정보화부서에서도 움직일만한 제재사항이나 평가방식

의 개선이 필요함

- 수기결재를 강제로 금지하였으면 함. 전자결재시스템이 있는데도 윗분들이 서명을 너무 좋아함
-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에서는 수기결재문서를 생산하지 못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함. 수기 서면결재 후 문서번호만 시스템에서 따고 원본을 등록하지 않아 기관 중요 기록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또한 수기서면결재의 경우 맨 앞장에만 서명하기 때문에 결재문서의 내용을 결재 후에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7. 분류체계

- 각 공사공단, 대학교에서 RMS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함. 2017년 말까지 기록관리기준표를 모두 만들라 했는데 만들었는지도 궁금함.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RMS 도입 예산이 3년째 짤려서 기록관리기준표는 제가 머리 짜내서 일단 임의로 만들어 사전 정보공표에 올렸고 기록물은 엑셀로 관리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얼마 전 수십억 들여 생산시스템을 바꾸었음 그래서 (분류체계) 안 바꿀 것임.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임
- BRM 적용 안 되는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의 포지션이 애매함
- 2017년까지 무조건 BRM으로 넘어가야한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맞는 건가?
⇒ 안 그래도 기타 공공기관에 BRM을 적용하라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알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는 꼭 BRM이 아니어도 기록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좋은 일임
- 정부산하공공기관 매뉴얼에는 무조건 전환해야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 기타공공기관 올해부터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해야하는데 이번 재설계에서 언급이 되는지?
⇒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답은 담당부서에게 물은 후 답 드리도록 하겠음
- 기록관리기준표 만들 때도 기록원에 문의하니까 1레벨 2레벨은 생략하라고 하고 BRM 생략하라 하던데 그럴 거면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전화로 그럼 기록물분류기준표 쓰면 안되고 물으니 기록관리기준표를 쓰라고 함. 그래서 알아서 편법으로 운영 중임
- 산하기관은 RMS는 커녕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조차 어려운데 법은 자꾸 단위과제 위주로 개정하고 있어, 적용하기 힘들. 지향점은 공감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작은 기관 환경도 고려해서 유예기간이나 배려방안 부탁드림

- 공사에 입사하여 4년째 시스템 개발하고 기록관리기준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직원들에게 알리고 매년 폐기하고 기존의 기록관리체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 시점에 뭔가 뒤집어엎는다면 어찌할지 걱정임

8. 행정정보데이터세트

- 데이터세트와 관련된 조문은 정보화 관련 법령, 지침과 연계되어야 정보화 부서에서도 인지할 것임
- 동의함. 굳이 기록관리 법령을 그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음
- ⇒ 전자기록과장임. 위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 유념하겠음
- 시스템으로 업무를 한 기록인 데이터세트와 이걸 바탕으로 결재, 출력해서 비전자문서를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기록관리기준표와 데이터세트 보존기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 둘 중 하나만 보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면 분리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데이터세트와 관련한 조항이 생긴다면 각 기관 정보화담당자와 전문요원 교육도 부탁함
- ⇒ 쉽지 않은 문제임. 현재도 디브레인이나 인사시스템이 결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결국 보존기간, 이관여부, 이관시 링크의 처리 모두 검토 연구 대상임
- ⇒ 현재 법 안에는 링크 결재시 결재문서에 등록된 경로 했으나 이 경우 물리적 이관시 링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업무시스템에서 결재행위가 이뤄진 경우 그 기록은 법적으로 진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함. 모든 업무가 그룹웨어 결재시스템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고, RMS 구축도 바로 되기 어려움
- ⇒ 좀 더 사례를 알려주시면 연구하도록 하겠음. 업무시스템 결재문서의 진본성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됨
- 그러면 업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받은 품의서, 보고서들을 굳이 종이로 출력하는 행위는 생략이 가능한 경로 보임
- ⇒ 그러함. 다만 링크불임이 골치임
- 업무혁신 차원으로 문서 간소화도 추진되고 있음. 원본 보관이 잘될지 의문임
- 데이터 표준에 대해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빅데이터 관련해서 행안부랑 과기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빅데이터의 품질, 표준화를 위해 ISO에 의견조회도 했다고도 함. 빅데이터의 요건 중 '진실성'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선 기록원에서도 받을 집어 넣을만한 사항인 것 같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기록인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을 듯함. 준비해 볼만한 분야라고 생각함

9. 기록관리 교육

- 공인중개사 제34조법에서는 개업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기록물관리전문요원도 신규 배치시 실무 교육 이수 부탁함. 신규 요원인 경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 필수교육 이수가 있어야함
- 성희룡 성폭력 같은 사안은 자격 가진 강사가 전직원 대상 필수 교육함. 비슷한 조치가 필요함. 교육자료 보내도 서무직원만보고 부서마다 다른 직원은 협조 안함. 처리과 기록물담당자가 몇 백권, 몇 천권씩 보관 기록물 목록을 작성해서 보고하거나 허위함. 문서관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음. 이것이 기타 공공기관의 현실임
- ⇒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 그럴 것임. 교육 조항 신경 쓰고 있음. 뿐만 아니라 조항으로 그치지 않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음
- 솔직히 기관에 기록관리는 기관장의 관심도가 중요하다 생각함. 혹시 기관장을 필히 참석하게 하여 교육이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
- 동의함. 기관장의 관심이 가장 중요함. 기관장의 기록관리 교육이 필요함
- 실무자가 열심히 해봐야 기관장이 관심 없으면 솔직히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청렴, 반부패 교육이나 성관련 교육처럼 기록관리 온라인 교육을 관리자 필수과정으로 지정하는 건 어떨지
- 필수로 넣어도 정작 기관장 본인이 관심 없으면 조회 때 유인물 나눠주고 실적 때우는 교육이 됨
- 온라인이니 필수 교육은 정말 시간 채우기용임
- 심지어 온라인 교육은 검수 안하셨는지 왜 그리 틀린 내용이 많은가
- 무단폐기도 '안 걸리면 되지'라는 게 일반 직원들 생각임
- 그래도 국가기록원 관리자교육 다녀온 실처장님들은 인식이 좀 바뀜. 기록원에 있는 보존박스 만드는 기계도 구매해보라고 함
- 기록관련 관리자교육 바빠서 갈 시간 없다는 분들만 봤음. 필수교육시간 만들어주실 수 없는지
- 온라인교육, 국가기록원 교육도 동일 교육 차수별로 여러 번 들어도 인정되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싶음
- 솔직히 기관장이 관심만 있다면 실무자는 더 열심히 하지만 기관장 관심도가 많이 떨어짐
- 각 기관 기관장을 의무적 참여로 불러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떨지. 솔직히 책임관이나 담당자 교육은 기관 내에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평기준 적용하면 기관장이 관심은 갖겠지만 말장난 보고서를 위한 허풍실적으로 채워질 걸 생각하면 비추함

- 직급과 관계없이 기록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직급이 높으면 설득을 할 수 있나? 이거 보다는 법령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함
- 기관 해당 직원이 내부직원은 교육하는 방식이면 효과 없을 것임
- ⇒ 기관장 교육이수는 책무로 명시할까를 고민하고 있음
- 기관장 교육 제제 강추함
- 성폭력·성희롱·폭력예방은 법정 의무교육이라 공공기관은 전직원 필수 이수사항임
- ⇒ 성폭력·성희롱 교육이 의무화되는데 삼십년은 걸린 것 같음. 시간이 흐른 것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사건이 있고서야 가능해졌음. 기록관리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될 것임
- 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음. 국가, 지방, 기타공공기관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기록관리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함
- 기록관리 교육의 경우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나눠서 필수교육의 경우 공문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필수참석으로 해주면 좋겠음. 당장 필요도하지 않은 교육 왜 들으러 가냐 해서 듣고 싶은 교육도 가지 못함
- 하다못해 공익요원관리담당자 교육도 기관 당 1인 이상 담당자 필히 참석으로 공문이 와서 그 교육은 아무 이견 없이 다녀왔는데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기록관리 교육은 가려면 눈치를 봐야함
- 기록관리 기관방문교육도 조건 없이 많이 해주면 좋겠음. 지난번에 신청했는데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못했음

10.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심 필요

- 기타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해주길 바람. 특히 중앙부처 산하기관들은 중앙부처가 정책결정을 하면 대부분 산하기관이 실행함. 결국 중앙부처에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기록만 남고 실행, 결과의 기록은 거의 없을 것임(보조금 정산 자료 정도?). 산하기관의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정책결정 과정만 기록으로 남을 것임
-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예외조항이 너무 많음. 스캔했는데 폐기하면 안되냐 묻는 사람이 많음
- 동의함. 아직 민간인 서명수령 때문에 비전자문서가 많은데 스캔한 원본 문서 폐기문의 잦음
- 그리고 산하기관은 상급기관 주무부처에서 자주 간섭해야 기록관리를 그나마 함. 국감 같은 데라도 집어넣고 싶은 심정임

11. 기타

- 오픈 채팅방 운영이라는 시도 감사함
- 재난안전현장훈련 기간에 설명회를 하는 건 조금 아닌 듯함
- ⇒ 훈련이 겹칠 때 얼마나 출장이 어려운지 알고 있으나 국가기록원도 말하자면 긴 사정이 있었음
- 국가기록원도 긴 사정이 있겠지만, 오픈채널을 통한 문자중계나 라이브 방송과 같은 채널 확대 시도로 참여가 독려되었다면 더 좋았을 듯함
- ⇒ 그 방법도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니나 말씀하신 것들을 하기엔 기록관리혁신단 인원이 너무 적음. 양해 바람
- 먼저 이 방의 목적과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죄송하지만, 대강당의 의자는 설명을 듣고, 필기하기가 힘들. 이정도 인원을 수용 할 수 있는 다른 강당이나 회의장 찾기 바람
- 폰으로 녹음하시고 집에서 조용히 들어보는 방법 추천함
- ⇒ 불편함을 알고 있지만 대상기관이 700여 개이어서 이에 맞춰 대관하였으므로 양해 바람
- 오픈 채팅방으로 각 기관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음. 멋진 한걸음을 시작한 듯함
- 여러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음. 일단 소통공간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듦. 그런 의미에서 이 오픈 채팅방은 의미가 있음. 이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함. 앞으로 주제를 정해 오픈 채팅방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함. 더불어 혁신추진단 게시판도 자유게시판 형태는 유지하고 주제별로 나누어 거기서 토론할 수 있게끔 개편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함. 공공기관에서 여러분 참여하고 게시지만 참여 못하는 분들도 게시나 게시판을 혁신과제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면 좋을 듯함
- 일정기간 채팅방 유지에 찬성함. 기관1인 담당자로 우물안개구리라는 생각이 듦
- ⇒ 국가기록원의 혁신게시판은 리모델링을 해야 원하는 게시판을 만들 수 있음. 예산이 수반되니 기다려주었으면 함
- 지속적인 채널 운영에 동의함. 다만 일일이 이렇게 국가기록원 측에서 민원처럼 대응해 주시는 것 보다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음
-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관리가 필요하지만 전자기록만을 고려하는 기록관리 체제는 위험함. 전자기록은 행정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기록관리의 효과성을 위한 것이 아님. 물론 기록은 행정을 중심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전자정부시대에 전자기록과 행정정보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타국에서조차도)에서 비전자기록이 생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필요함. 전자기록에 집중해서 오히려 기록관리 본연의 목적과 방향성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임
- ⇒ 맞음. 여전히 종이기록은 생산되고 있음. 이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만들어야 함

- 기념사업 안 하는 사립대학은 기록관리가 아니라 참고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함
- 국공립대 대학은 폐기위주, 사립대는 역사기록물 정리 위주로 기록관리를 함
- 문서 클라우드 첨부물 보내면 보안으로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망이 분리된 기관들은 첨부물 보기가 너무 힘들. 개선 바람
- 이번에 강하게 법률로 제정되면 좋겠지만 비밀기록물 개정이 막혔었다는 설명처럼 국가기록원이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음을 아니 답답하고 슬픔
- 꼭 강력한 제도와 법률이 우리에게 달콤한 상황을 줄 것이라는 생각도 의심해 봐야함
- 기회가 된다면 원장이 여러 사람, 특히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학 총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국총장협의회 등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함
- ⇒ 그 길도 찾아보겠음. 전국총장협의회의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면 좋을지 조언 주길 바람
- 교육을 의무화 할 수 없다면 기관장 회의 때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을 좀 해주셨음 함. 기관장들 연합회기 많으니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해주었으면 함
- 과거에 원장이 국립대 총장협의회나 사립대총장 협의회에서 기록관리 설명을 하신 사례가 있음
- ⇒ 방법을 찾아보겠음
- 사실 사립대학의 현실정은 암흑기임. 원장이 바쁜 줄은 알지만 총장협의회에 꼭 참석해 주었으면 함
- 혁신의 내용에는 외적(환경)인 쇄신이 대부분임. 우리 내적인 쇄신에 대한 부분도 언급 되길 바람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구성의 경우 대부분 학회나 교수급으로 되어있음. 위원 조건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경력이나 실무경험 사람도 배치 부탁드림
- 생산현황에 관해서는 별도 개정 사항이 없는지?
- ⇒ 생산현황도 당연히 개선할 것임.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기재사항이 맞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나중에 의견 수렴 시 좋은 의견 많이 주길 바람
- 정보공개 책임관 제도 등으로 비춰봤을 때 책임관 제도는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클 것임
- 국어책임관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책임관이 될까 염려스러움
- 소수인력 기관에 무수한 책임관 지정 요청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총무부서장 한분이 다 맡고 있음
- 공감함. 감투만 많아짐
- 책임관보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불러서 교육하고 이슈화를 해야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임
- 나는 심지어 공공저작물책임관이지만 아직 개념이 잡히지 않음

- 좋은 사례가 있으면 널리 알려주는 채널도 있었으면 함
- AMS 표준도 빨리 정립 되었으면 함
- 많은 분들이 의견주셨듯이 기타 공공기관 사람들은 서로 배치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워 소통이 어려웠음. 이러한 방식이 지속·확대되길 바람(국가기록원에서 가능하다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기관 현황표 배포가 가능한지?)